

Ⅱ. 점 검 사 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및 조 치 사 항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충족여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종사자중 취사부, 미화원, 행정원 등 신규 종사자 신원 → 개인정보동의서, 등록 기준지 ※ 신규종사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 아님을 진단서로 제출(신규 산후조리업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건강상태 기록·관리 및·보존기간 준수 여부	
<input type="checkbox"/> 감염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필요조치 실시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신부나 영유아 감염의심, 안전사고 등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 여부 및 이송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여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업자, 종사자(신규종사자 포함) 건강 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여부 ※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수두, Tdap, A형간염, MMR ※ 예방접종은 '16년 6월 시행 예정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업 종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 교육이수 여부	
<input type="checkbox"/>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게시여부 * 환불규정은 '16년 6월 시행 예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미신고 영업변경신고, 승계사실 보고, 휴·폐업 재개 신고, 산후조리원 명칭사용 등 위반여부)	
<2016년 모자보건사업 지침내용 추가>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비치	
<input type="checkbox"/> 정기적 소독 실시 비치 (일시/소독방법/사용약제와 방식/소독대상)	
<input type="checkbox"/> 화재보험 및 책임배상보험 비치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수 및 월별로 감염병발생 현황 기록관리 반기보고(6.30, 12. 31) → 7일 이내 보건소로 보고	

Ⅲ. 감염병 발생 현황

산후조리원명 :

발생일 (진단일)	감염질환				대상(명)			이송여부	
	위장관계 질환명	호흡기계 질환명	접촉감염 질환명	기타 질환명	신생아	산모	종사자	이송 (입원/외래)	미이송 (사유기재)
8.29	로타바이러스 감염				1			입원	
9.12		모세기관지염			1				퇴소한 산모의 연락을 통해 인지됨
10.28		결핵					1		건강진단결과 결핵판정
11.15		잠복결핵			2				종사자 결핵발생에 따른 역학조사중 발견

비 고

Ⅳ. 감염 관리 지도 사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 손위생			
1. 출입구에 방문객용 세면대 또는 손소독제가 있다.			
2. 신생아실 입구에 세면대 또는 손소독기(손소독제)가 있다.			
3. 공용 세면대에는 종이타월이 구비되어 있다.			
4. 손소독제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5. 세면대(또는 손소독제) 주변에 손위생 홍보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 환경위생			
1. 신생아실내 꽃이나 화분이 없다.			
2. 일상적인 환경청소는 소독제 없이 물걸레를 이용한다.			
3. 사용중인 신생아 요람은 청결한 물걸레로 닦는다.			
4. 신생아 요람을 닦는 걸레와 바닥 닦는 걸레가 구별되어 있다.			
5. 신생아 요람마다 별도의 걸레 또는 일회용 물수건을 사용한다.			
6. 사용한 걸레는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7. 전체적으로 바닥이나 환경이 깨끗하고 먼지가 없다.			
□ 세탁물과 폐기물 위생			
1. 사용한 세탁물은 수집용기(햄퍼)에 담는다.			
2. 혈액이나 분비물에 젖은 오염 세탁물은 별도의 햄퍼를 사용한다.			
3. 사용한 세탁물은 소독된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세탁물 수집장소가 확인되고 다른 시설과 구분되어 있다.			
5. 세탁물을 운반할 때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커버를 씌운다.			
6. 사용한 기저귀는 비닐봉지에 담아 폐기물통에 버린다.			
□ 물품위생			
1.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 세척한다.			
2. 정확한 희석방법에 따라 권장농도를 유지한다.			
3. 여러 소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소독시간을 준수한다.			
5. 소독제가 물품에 충분히 접촉하도록 한다.			
6. 염소계 소독제는 사용하기 전에 희석한다.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급식위생			
1. 조리실내 조리용 싱크대는 조리전용으로 사용한다.			
2. 식수와 조리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3. 취사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한다.			
4. 취사자는 급식준비동안 반지, 팔찌, 시계를 착용하지 않는다.			
5. 조리실에서 근무시작하기 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6. 수세미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7. 급식용품(수세미, 행주, 도마, 칼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고 바닥, 조리대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8. 소독이 완료된 급식용품은 건조시킨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관리			
1.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다.			
2.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3. 염소계 소독제를 희석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신생아 관리			
<신생아 수유>			
1. 수유준비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2. 수유준비용 전용 싱크대가 있다.			
3. 분유를 준비하기에 앞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4. 소독된 수유물품을 준비한다.			
5. 분유를 탈 물을 100℃이상 완전히 끓인다.			
6.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한다.			
7. 냉장고는 온도 확인이 가능하다.			
8. 개봉한 분말분유는 1달,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이내 사용한다.			
9. 수유후 남은 분유는 버린다.			
10. 분유를 데울 때는 전자렌지를 이용하지 않는다..			
11. 젖병은 전용세정제 세척→열탕소독→건조 순으로 관리한다.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작성방법 >

◆ I. 일반사항 : 에 표시하거나,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1. 개설일(신고증에 기재된 날)

- ▶ 최초 산후조리원 개설일과 지위승계 등으로 산후조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현업자 개설일 모두 기재

2. 산후조리업자

- ▶ (개인) 해당 자격에 인원 수 기재, 자격 중 간호사와 조산사 둘 다 해당되는 경우는 조산사 란에 기재(간호사와 조산사 중복기재 불가), 열거된 자격 중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기타 란에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인원 수 기재
- ▶ (법인) 해당 법인 종류에 ○표시하고 법인명 기재

3. 건물형태/ 규모

- ▶ (건물형태) '단독건물'은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병의원건물'은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복합건물'은 타 용도 시설과 산후조리원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 한 건물에 병원(약국포함)과 산후조리원, 타 용도시설(편의점, 은행 등)이 모두 같이 있는 경우는 복합건물에 해당
- ▶ (건물규모) 입주구역에는 산후조리원의 층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전체건물은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전체 층수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기재

4. 협력의료기관

- ▶ 협력의료기관은 산모, 신생아 이송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종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산후조리원 동일건물 소재유무, 산후조리원에서 협력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기재

5.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 ▶ 일반요금('만원' 단위)은 단태아, 2주, 카드결제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실 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 기준이되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비싼 방의 요금을 기재

6. 이용요금 공개방법

- ▶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되, 산후조리원의 별도 홈페이지는 없으나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이 안내되는 경우 해당 산부인과 홈페이지 주소 기재
-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모두 이용요금을 공개해야함

7. 가입보험

- ▶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염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란에 체크하고 가입 보험사명을 기재,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보험일 경우 화재보험 란에 체크하고, 나머지 가입보험은 기타 란에 모두 기재

8. 영유아실

- ▶ 정원에는 실당 정원을 합하여 기재/ A, B, C실당 정원을 각각 기재하고 해당 면적을 기재

9.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 ▶ 점검당시 직전월 이전 3개월분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 ▶ '15.12월 1일에 점검을 갔다면 '15.9~11월(3개월)까지 매일 입원중인 영유아 수를 합산한 후 3개월 동안의 총 날짜수로 나누어 기재

10.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 (반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12월 31일 경과 후 기재)

- ▶ 6개월 동안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수를 기재하되, 입원일수와 상관없이 1일(중도 퇴원의 경우)이라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입원)했다면 해당 산모를 포함하여 기재
- * 예시) 7.2일 1명, 7.6일 2명의 산모가 각각 2주간 이용 후 퇴원, 7.28일 입원 산모 1명이 일주일만 이용 후 중도 퇴원한 경우 7월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총 산모수는 4명(입원일수 계산x)
- ▶ 산후조리원은 월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수를 기록관리하고 6.30일, 12.31일 이후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6개월간 이용산모수를 보고/ 보고받은 보건소는 실태조사서 I.일반사항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란에 보고받은 사항 기재
- ▶ 연도 중간에 신규개설된 산후조리원은 개설시점부터 6.30일 또는 12.31일까지 이용산모수를 기재하고 해당기간도 같이 기재

11. 종사자수

- ▶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면허를 갖고 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 업자도 해당 인력수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업자포함 란에 유무를 체크

◆ **Ⅱ.점검사항 : 모자보건법 및 모자보건사업안내를 참고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 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재**

◆ **Ⅲ.감염병 발생현황 : 산후조리원 이용시 발생한 감염병 발생현황을 기재**

1. 신생아, 산모 및 종사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해 감염병(선천성질환 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기재
2. 산후조리원은 월별로 감염병발생현황을 기록관리하고 6.30일, 12.31일 이후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6개월간 감염병발생현황을 작성하여 제출
3. 감염병 발생현황 서식은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추가 설명 등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 **Ⅳ.감염관리 지도사항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대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종합의견을 기재**

- ① 보고 사항 :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 감염병 발생 현황
- ② 보고 시기 : 1년 2회 보고, 6.30일, 12.31일 이후 7일 이내